

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공고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과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과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'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3.

과주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- 사업내용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	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계약을하고 보증에 가입한 세대	세대당 40만원 이내 (실비 지원)	1회
② 월세 지원	새로운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세대	월 20만원 이내 (실비 지원)	최대 12개월
③ 소송수행경비 지원	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세대	세대당 100만원 (실비 지원)	1회

※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받은 경우, 공제 후 지급

2.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

□ 지원대상

-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
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 및 전세피해자(HUG 피해확인서 발급자)

□ 지원내용

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를 납부한 자
- 지원내용 :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- 지원범위 :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·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

② 월세 지원

- 신청자격 :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
- 지원내용 :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지원범위
 -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
 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지원 제외
 -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,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

③ 소송수행경비 지원

- 신청자격 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한 자
- 지원내용 :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- 지원범위 : 경·공매, 보증금 지급명령,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,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가 발생한 세대
※ 변호사 선임 비용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
□ 피해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

- 지급일 : 신청·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 - ※ 날짜 산정시 주말·공휴일은 제외
 - ※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

3. 기타(유의) 사항

- 본 사업은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,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, 지원대상자 취소·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용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기간을 적용합니다.
-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4. 상담 및 문의

- 사업문의 :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(☎ 031-940-4706)
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
- 접수처 : 파주시청 제2별관 1층,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(시청로 36)

[참고] 사업별 제출서류 목록

사 업 명	제출서류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	③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	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)
	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- 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등
	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	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⑧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월세 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	③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	④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
	⑤ 월세납부 증빙 서류 - 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
	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	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⑧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소송수행경비 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	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	④ 소송수행경비 증빙 서류(인지·송달료, 법원 접수증, 기타 경비 등)
	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	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⑧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